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현행 조례 제3조~제8조)
-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가(안 제1조~제3조)
-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조항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
- 민간 위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정부 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우리 구의 유사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전반에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의2에서는 산후조리비용으로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26만 500명) 대비 1만 1,500명(-4.4%) 감소하였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 또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구 자체 사업 중 유사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거주요건 충족시에도 소득기준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거주요건 충족 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됨.
-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유사 지원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고,
- 이와 함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4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현행 조례 제3조~제8조)
- 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가
(안 제1조~제3조)
- 라.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4조의2)
- 마. 민간 위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2. 9. ~ 3. 2./21일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출산장려사업”이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5.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